



**MAERSK
LINE**

컨테이너 손상 확인서

컨테이너 번호	
반납 일시	년 월 일
반납 지역	
화주명	
내품명	

* 손상 컨테이너가 많을 경우 별도의 첨부 서류를 본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상기 컨테이너의 손상과 관련하여 선하증권 약관 15.4 및 15.5항에 의거하여, 본 회사에 컨테이너 손상 및 수리비 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차후 이 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컨테이너의 모든 수리비 및 OOS Charge (55,000원 / Dry - 수리비가 82,500원 미만, 165,000원/Dry - 수리비가 82,500원 이상, Reefer는 385,000원)에 대한 지불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수리비 및 OOS 면제조건 - 선적지에서 공컨테이너 수취시부터 손상된 부분임이 공식 서류 및 관련 서신 등으로 입증된다면, 수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면제이며, 청구는 취소됩니다.

법적 청구 근거 - Consignee(수하인, 구매자)가 B/L(선하증권)을 인도받는 시점에서 Shipper(송하인, 판매자)의 화물에 대한 권리 및 컨테이너 관리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가 함께 이전됩니다. (즉, Shipper의 잘못으로 인한 손상의 경우도 법률상 Consignee의 공동책임이며, 관련 비용 지불 후, Shipper에 대한 클레임, 손해배상 등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국내 상법 814조에 의거하여, 청구기간은 1년간 유효합니다. 빠른 청구 및 정산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명기된 MAERSK LINE EMR 담당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5일 이내에 청구서 및 관련 사진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컨테이너 손상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부산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해결합니다.

EMF Charge 를 납부하신 경우 - EMF 비용 (컨테이너당 \$45 또는 54,000원)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EMF를 지불하신 근거서류 (Arrival Notice 혹은 B/L Copy) 를 운송사를 통하여 터미널/데포 게이트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손상 수리비 부담 책임자 (반드시, 실 수리비용 부담자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회 사 명	
담당자 (성함 / 직위)	
연락처 및 핸드폰번호	
e - mail 주소	
직 인	(인)

손상확인서 제출처

: 각 터미널 게이트 또는 PNC의 경우 ECO사무실 (051-601-8220)

머스크라인 육상업무팀 연락처

E-mail : KOROPSEQUEMR@maersk.com

Fax : 02-3700-3096 (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상의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 이진호 과장 (051-410-5730), 김병만 대리 (5731), 이우호 사원 (5715)